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8월 16일, 김도읍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4년 8월 1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24.11.15.)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11.25.)

상정 · 축조심사 · 수정의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국방위원회(2024.11.2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국회의원 김도읍)

현행 피한정후견인인 결격조항은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와 상관없이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각종 자격의 취득, 영업의 등록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피한정후견인을 배제하고 있음

이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여 행위능력의 획일적·포괄적 배제에서 개별적·한정적 제한으로 전환하려는 성년후견 제도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 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오명호)

○ (성년후견 제도 개요)

- 민법상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용어자체의 차별성 문제,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개인의 행위능력 박탈·제한 문제 등으로 의사능력에 장애가 있더라도 현재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행위능력을 개별적·한정적으로만 제한하는 성년후견 제도 도입(2011.3., 금치산·한정치산 제도 폐지)

○ (총괄 검토)

- 기존의 금치산자·한정치산자의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용어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으로 1:1로 치환해 정비하는 경향으로, 피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와 모순되고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피후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 발생
- 2개의 개정안은 결격조항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직무수행능력이 인정되는 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의 타당성 인정
- 다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 또는 기술적 지식이 요구되거나 상당한 주의의무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개별 법률을 대상으로 사전적 또는 사후적 검증수단을 통한 직무수행능력 판단 여부 확인 필요

○ (법률별 검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본문) 현행법에서 제조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기준 외에 특별히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적 지식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바, 법령 해석능력, 시설 구매계약(매매계약)을 체결할 정도의 수행능력이면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능력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보여지고, 현행법 상 허가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점과 허가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직무수행능력을 직접·간접적으로 판단 가능한 점 고려 필요
-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총 31건이 있었는데,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관련 법령의 심도 있는 적용·해석이 필요한 직종(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사회복지사 등)에서도 피한정후견인 제외
- (부칙) 현행법에 따라 제조판매업 허가 후 피한정후견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 3년의 허가제한을 두고 있으나, 부칙에서 특례를 규정하여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더라도 개정안 시행 즉시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나,
부칙의 특례가 없어도 현행법 제4조제4호의 단서조항에 따라 피한정후견인이 제조판매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경과규정이 애초에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부칙 특례는 실익이 없는 점과 현재까지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 허가가 취소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대표자 등 이력서 첨부)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히 고도의 전문성이나 기술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바, 관련 규정 해석능력, 등록신청서 등 작성 정도의 수행능력이면 군수품무역대리업을 영위할 능력이 있다고 보여짐. 또한 현행법 시행령 상 취소시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청문 과정에서 직무수행능력의 유지가능성의 확인이 가능한 점 고려 필요
- 참고로, 제21대국회에서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제외 법 개정이 총 31건이 있었는데,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관련 법령의 심도 있는 적용·해석이 필요한 직종(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사회복지사 등)에서도 피한정후견인 제외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법률안심사소위원장 부승찬)

부칙 제2조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에 관한 특례는
실익이 없어 삭제함.

6. 심사결과

수정의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과정을 거쳤음.(원안의결)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

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

제안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부칙 제2조 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에 관한 특례는
실익이 없어 삭제함.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
개정을 위한 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삭제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칙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u> <u>다.</u>
<u>제2조(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u> <u>· 판매업 허가에 관한 특</u> <u>례) 이 법 시행 전에 제조·</u> <u>판매업자 본인 또는 그 임원</u> <u>이 피한정후견인에 대하여</u> <u>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u> <u>· 판매업 허가가 취소된 경</u> <u>우에는 「군복 및 군용장구</u> <u>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4</u> <u>조제4호 본문에도 불구하고</u> <u>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3년이</u> <u>경과되지 아니하여도 허가를</u> <u>받을 수 있다.</u>	<u><삭 제></u>

법률 제 호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제1조(「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의 개정) 군복 및 군
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피성년후견인

제2조(「방위사업법」의 개정) 방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제57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4조(결격사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2. <u>피성년후견인</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제57조의2(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 ① ----- ----- ----- ----- ----- -----.
1. <u>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u>	1. <u>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u>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